

정부대행기관 지정서

상호(명칭)	
대표자 성명	
소재지	
업무범위	

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에 따라
위와 같이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 직인